

##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

### 1. 고시·공고 명칭
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·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### 2. 고시·공고 근거법령 (법령, 조례, 규칙 등 상세 기재)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### 3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)

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·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

### 4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(해당 칸에 ■ 표시)

유형	생략사유	해당여부
A	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·열람·공청회·토론회·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)	■
B	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관련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C	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D	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4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
### 5. 작성자

공공주택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인원